

##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채희석 변호사

정부는 지난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등 그간 여러 차례 과도한 금융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발행·공시규정')이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및 개정 발행·공시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감독기준 완화****가.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 조정**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이 면제됩니다. 다만 외환포지션 한도규제는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신탁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국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외환건전성 규제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나.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회계자료 제출 부담 완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제출이 허용됩니다.

#### 다.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 자회사의 전산설비 해외 위탁 허용

그간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지점은 장외파생상품 업무 관련 전산설비 등의 해외 위탁이 가능하나, 국내 자회사의 경우 규정 미비로 해외 위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자회사 역시 해외 위탁이 허용되었습니다.

#### 2.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국은행을 추가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이 국채, 통안채, 재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 3.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재기산 예외사유 확대

현행 규정은 채권발행시 증권신고서상 발행 예정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이 다를 경우 효력발생기간을 재기산(3영업일)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채권발행 금액이 증권신고서상 발행 예정금액의  $\pm 20\%$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기간이 재기산되지 않도록 하여 채권 발행절차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 4.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자기매매 한도 설정

금융투자업자가 과도한 파생상품 자기매매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파생상품 자기매매에 따른 최대 손실한도를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5. 외국인 투자자 등록신청시 내국인의 가장 등록 거부·취소근거 마련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검은머리 외국인)하여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 다운로드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